

붙임1.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카페 운영 및 정원연출 참가기업 모집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담당자	성명(직위)			연락처	☎
	주 소				
	e-mail				
신청분야	보라매정원카페 운영			보라매테마정원 연출	
신청규모 (신청분야에 맞춰 기재)	보라매 정원카페 운영	연출 면적			
		운영 기간			
	보라매 테마정원 연출	연출 면적			
		운영 기간			
전시참가 내용소개	<p>※ 별지 추가 제출</p> <p>신청서와 별개로 “전시 및 운영 계획안”을  별도 작성(자유 양식)하여 제출  정원 연출을 희망하는 가로, 세로 면적 표시 필수</p>				
<p>상기와 같이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카페 운영 및 정원연출전”에 참가하고자 합니다.</p> <p>2025. . . . .</p> <p>대표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처 : (주)환경과조경</p>					



#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카페 운영 및 정원연출 참가 규정

## 제1조(용어의 정의)

1. '참가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카페 운영 및 정원연출전'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말한다.

## 제2조(참가신청 및 참가확정)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최자가 제작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단, 출품 예정품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주최자는 별도의 선정 회의를 통해 최종 참가자를 확정한다.

## 제3조(전시 위치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접수순, 신청 면적, 전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가자별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 제4조(정원 카페 관리)

1. 정원카페 판매 음료 및 가드닝제품의 품목 및 가격은 주최측과 사전 협의한다.
2.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관계기관 등의 허가절차를 필하여 하며, 시설 운영에 따른 보험을 별도 가입한다.
3. 민원발생 등 계속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 주최측 요구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 제5조(정원 연출 및 전시 공간 관리)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참가자는 주최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참가자는 이용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도입되는 시설물의 개별 안전기준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최측에서는 관련기관 등의 안전성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5. 참가자는 전시기간을 고려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해약 및 박람회의 취소)

1. 참가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포기하거나 거부할 시, 차년도 박람회 참가가 제한된다.
2. 주최자가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참가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 제7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참가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기간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8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참가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제9조(전시장 경비 및 위험부담)

1. 주최자는 참가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2.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 제10조(전시 관련 판매실적 관리)

1. 제품 판매실적(매출 규모) 자료를 주1회 주최 측에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